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4인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182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둘 이상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의 복원 책임 등을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

를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4항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여러 명이고 그로 인해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누적·혼입되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복원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하여 그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수탁업체 사업장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 조치',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그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를 명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